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상범(02-2100-2660)	담당자	민인영 사무관 (02-2100-2661)	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경식(02-3145-6700)		황선오 팀장 (02-3145-6710)	

제 목 :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

- 2019년 10월 1일(화), 「**자본시장법 시행령**」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
 -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"**사모투자 재간접펀드**"의 **최소 투자금액 규제**(500만원 이상 투자) **폐지**

1. 개요

- 2019년 10월 1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 통과되었음

*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('19.3월)의 후속조치

2. 개정 내용

-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
 - (현행) 사모투자 재간접펀드*를 최초 도입시('17년 5월)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음

* 전문투자형 사모펀드(헤지펀드)에 자기자산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

- (개정)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

※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(500만원)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 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「금융투자업규정」에 대한 개정안은 2019년 8월 28일(수)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

3. 향후 일정

- 공포(관보 게재) 후 즉시 시행될 예정

*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